

사람중심도시 함께행복한 서구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 하수도 관리의 시작은 가정배수설비부터 -

2017. 3. 30.



대전광역시 서구

【 목 차 】

제1장 일반개요	1
1.1 배 경	1
1.2 현 황	1
1.3 관련규정	1
1.4 추진경위	2
1.5 지침 주요내용	2
1.6 지침적용 대상 및 시기	2
1.7 행정사항	2
제2장 배수설비 설치	3
2.1 배수설비 설치 신고	4
2.2 배수설비 시공	17
2.3 배수설비 준공검사	18
제3장 배수설비 폐쇄	25
3.1 배수설비 폐쇄 개요	26
3.2 배수설비 폐쇄 시공	28
3.3 배수설비 폐쇄 완료 검사	32
제4장 배수설비 유지관리	34
제5장 관련법규	38
부록	52
A.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53
B. 설비업체 간담회 의견 조치내용	57

제 1 장

일 반 개 요

1.1 배 경

1.2 현 황

1.3 관련규정

1.4 추진경위

1.5 지침 주요내용

1.6 지침적용 대상 및 시기

1.7 행정사항

제1장 일반개요

1.1 배경

건물·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배수설비의 설치·폐쇄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수설비 관리 대책 마련

1.2 현황

- 배수설비 설치 대한 관리는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및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자가 시공 후 색소시험 및 시공 사진이 포함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로 관리되고 있으나,
- 각 기준들이 산재해 있으며 일원화된 관리지침의 부재로 각 구청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시공 시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으로 표준지침 필요
- 건축물 철거시 기존에 사용하던 배수설비의 폐쇄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배수설비와 공공하수관로 접합부의 밀폐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아 도로함몰 및 하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1.3 관련규정

○ 배수설비 설치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 하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배수설비 폐쇄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3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철거 조치 명할 수 있음

1.4 추진경위

- 2016. 10월 : 2017년 시책구상보고 우수시책 선정
- 2016. 11월 : 하수도분야 법령, 시설기준, 시공사례 등 검토
- 2017. 1. 17. :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안) 입안
- 2017. 1. 17. ~ 1. 25. : 관련기관(부서) 의견 조회
- 2017. 2. 1. : 배수설비 시공자 간담회 개최
- 2017. 3월 : 관련기관 의견 및 간담회 결과 조치계획 수립

1.5 지침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수밀성, 내구성 확보를 위한 천공개수 및 이격거리 기준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및 준공검사서 작성 방법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표준설계도 작성 방법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및 준공검사서 작성시 검토 절차의 매뉴얼화
- 배수설비 폐쇄 절차 및 방법 제시
-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제시

1.6 지침적용 대상 및 시기

- 대 상
 -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거나, 공공하수도에 유입되어 있던 배수설비를 폐쇄하려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시 기
 - 본 지침 수립일로부터 시행
- 경과규칙
 - 시행일 이후 최초 배수설비 설치 신고(또는 건축 협의) 접수분부터 적용

1.7 행정사항

- 區 도로, 건축, 주택업무 관련부서 및 설계사, 시공사 등 지침 배부
- 區 홈페이지 게시

제 2 장

배수설비 설치

2.1 배수설비 설치 신고

2.2 배수설비 시공

2.3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2장 배수설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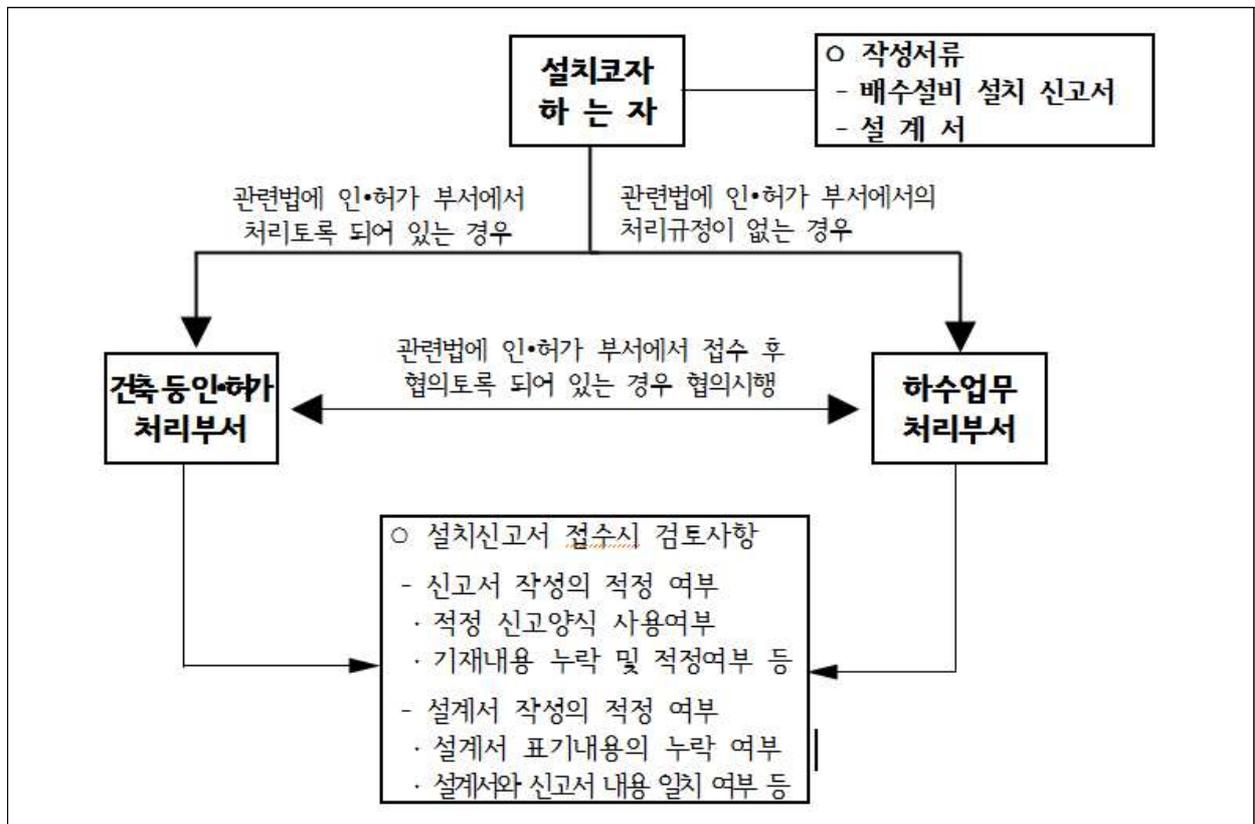
2.1 배수설비 설치 신고

2.1.1 일반사항

○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신고 및 처리절차



2.1.2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세부내용

○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 배수설비 설계서 및 신고서 작성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자체)

○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할 지역

-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BTL 시행사와 별도 협의

※ 향후 BTL 시행사 협의 의견 이행 여부 확인 후 배수설비 준공 처리

가.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

1). 설계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

○ 관 경

-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미만인 것은 지름이 75mm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 계획관경 적정 여부 검토시 오수량 기준이 아닌 배수인구 기준임에 유의

-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미만인 것은 지름이 75mm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m ²)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좌편과 같은 비율로 관경 또는 개수를 증가한다

-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m ³ /일)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경(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좌편과 같은 비율로 관경 또는 개수를 증가한다.

- 상기 관경은 최소 값으로서, 특수하게 수량이 집중되는 곳에서는 적은 량이라도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그 배수량을 지체 없이 유하시킬 수 있는 관의 크기와 경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상 계획 관경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사현장에서 우수관 등 관경 100mm 로 임의 시공하는 사례 빈번한 실정임

○ 관 종

- 하수도용 자재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되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등 사용

○ 관의 경사 및 유속

- 관거의 경사는 관경에 따라 100mm는 2/100 이상, 150mm는 1.5/100 이상, 200mm는 1.2/100 이상, 250mm이상은 1/100 이상 이어야 하며, 관거 내 유속은 0.6m/s ~ 1.5m/s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m/s로 할 수 있다.

○ 물받이 등의 설치

- 관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내경, 경사 또는 관중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부에서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 작성 등 용어 사용시 맨홀과 물받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일반음식점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유지차단장치 설치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빈번한 하수 역류 침수 피해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우수받이(또는 스크린조)에 플랩밸브(Flap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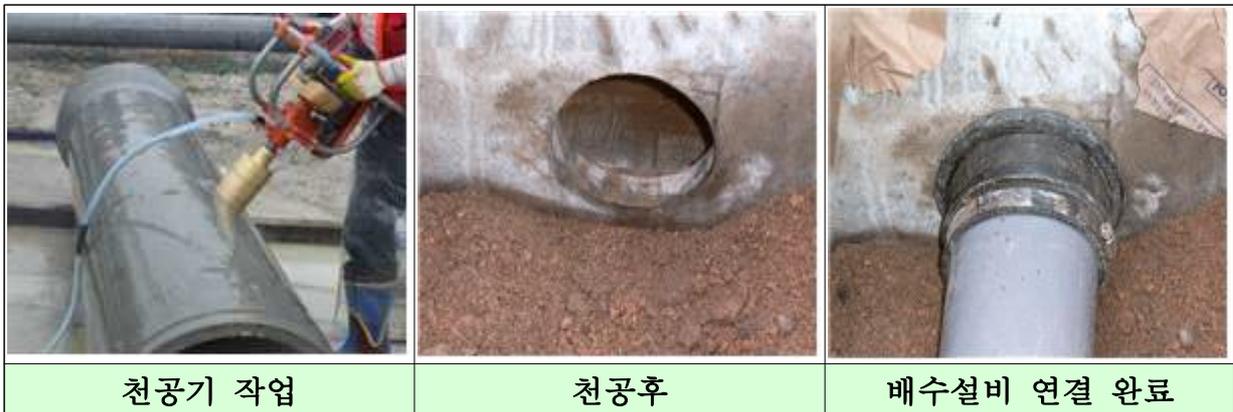


- 대지 경계부에 최종 우·오수받이(필요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오수받이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해야 한다.
- 스크린조 설치시 조목스크린과 세목스크린의 위치가 뒤바뀌지 않도록 유의하고 내부를 온전히 몰탈 방수처리하며 유출관의 관저고가 인버트 바닥고와 일치하도록 연결한다.

※ BII사업구역 내 정화조 폐쇄시 기존 오수받이 외에 스크린조 별도 설치해야 함

○ 연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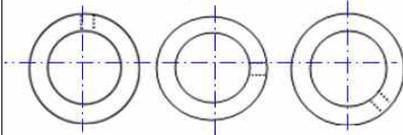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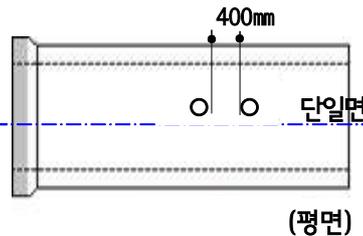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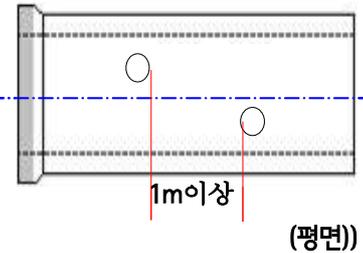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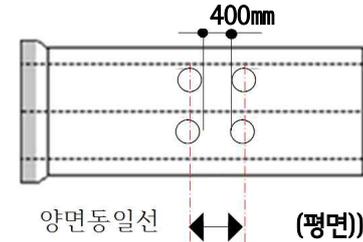
- 연결관의 경사는 1%이상으로 하고, 최소관경은 150mm로 한다.
- 공공하수관 연결시 공공맨홀의 원활한 유지관리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맨홀 접속을 금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관리청과 사전 협의해야한다.
- 택지개발사업부지 등 우수 배수설비 연결시 녹지대 수로관 및 도로 빗물받이에 접속을 금지하고 공공하수도에 직접 접속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관리청과 사전 협의해야한다.
- 공공하수관에 연결시에는 천공기를 사용



- 천공 후 연결시에는 단지관(연결용 자재)을 사용하여 수밀성 유지
 ※ 단지관이 공공하수도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상 주의할 것



- 천공 방법(본관이 원형관인 경우)

기 준	천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관거에 천공시 관저고에서 1/2 이상 지점 천공 - 종단면배치상의 내각 120°이상이 바람직함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중심 상단부, 수평부, 하단부 천공금지 - 상단부 : 유입부 좌우 추정 어려움(CCTV 판독), 낙차고 최대 지양(공공하수도 낙수 누적 파손 우려)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도에 2공까지만 천공(우오수 각 1공씩 제한) ※ 2공 인접 천공시 천공간격은 400mm 이상 이격거리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관거에서 천공시 인접한 타부지 기존 연결관과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관에서 양면에 2공씩 동일 선상에서 천공금지 		(X)

- 기존 가옥의 연결관 및 공공하수도 천공부는 내구성·수밀성 확보를 위해 철거 및 재시공

※ 택지개발사업부지 등으로 인해 설치된 분기관은 사용 가능

○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하수도법 제29조)

- 타인의 토지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나 시설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소 토피

- 건물 부지 내 배수관의 경우 최소토피 200mm 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2) 설계기준의 적용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타행위의 경우, 공공하수도를 제외한 대지 내 모든 관거시설은 배수설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목적에 따라 관거 내 최대유속 3.0m/s를 적용하는 등 일반 관거 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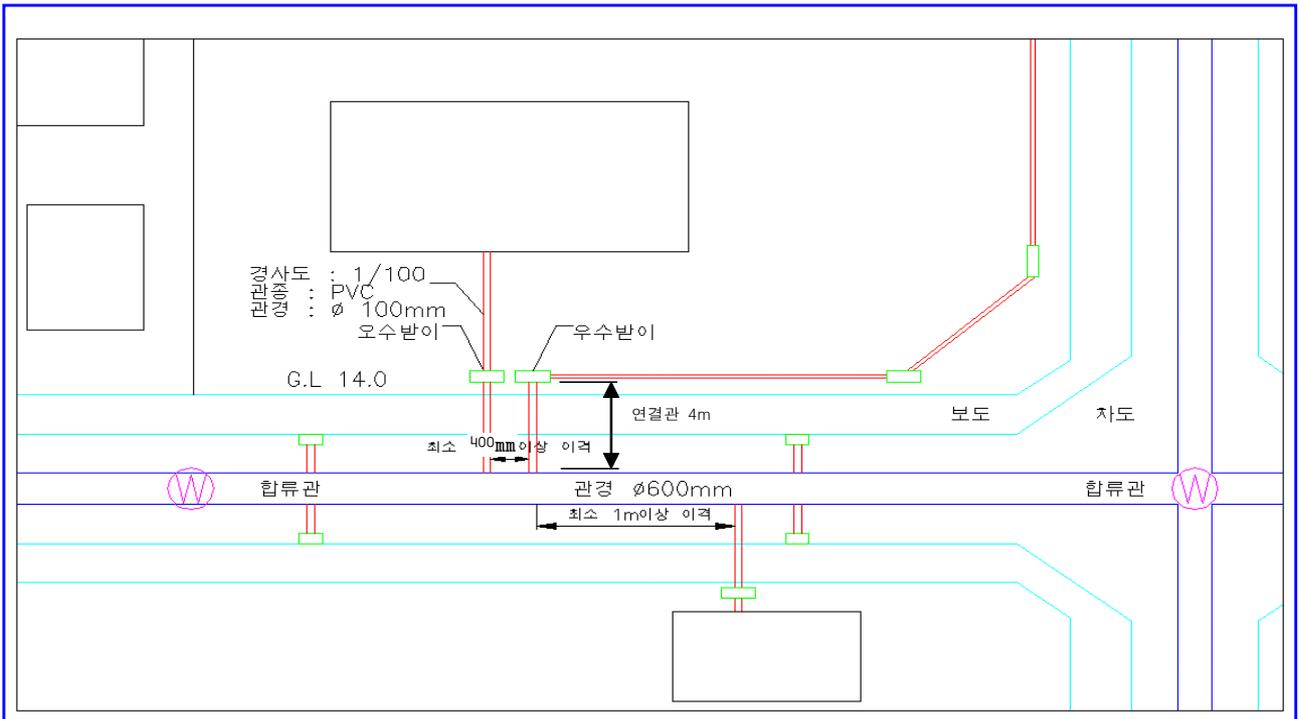
3)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 방법

- 기존의 타부지 배수설비 연결상태 확인(1m이상 거리확보)
- 공공하수관로의 상·하류(맨홀~맨홀사이) 관저고와 건물부지고를 사전 측량 시행
- 공공하수관로 연결시 공공하수관로 관저고에서 관경의 1/2이상 지점에 연결토록 표시 (관 중심 최상단부 천공 금지)
- 배수설비 매설지점, 관경, 경사 등 표시
- 공공하수도와의 접속부위 상세도 작성
- 평면도와 입면도를 작성하여 적정시공 유도
- 옥상 배수(홈통, 드레인 파이프)계획을 옥외 우수배제계획과 연계시켜 평면도를 작성할 것(옥상 우수의 도로 무단 배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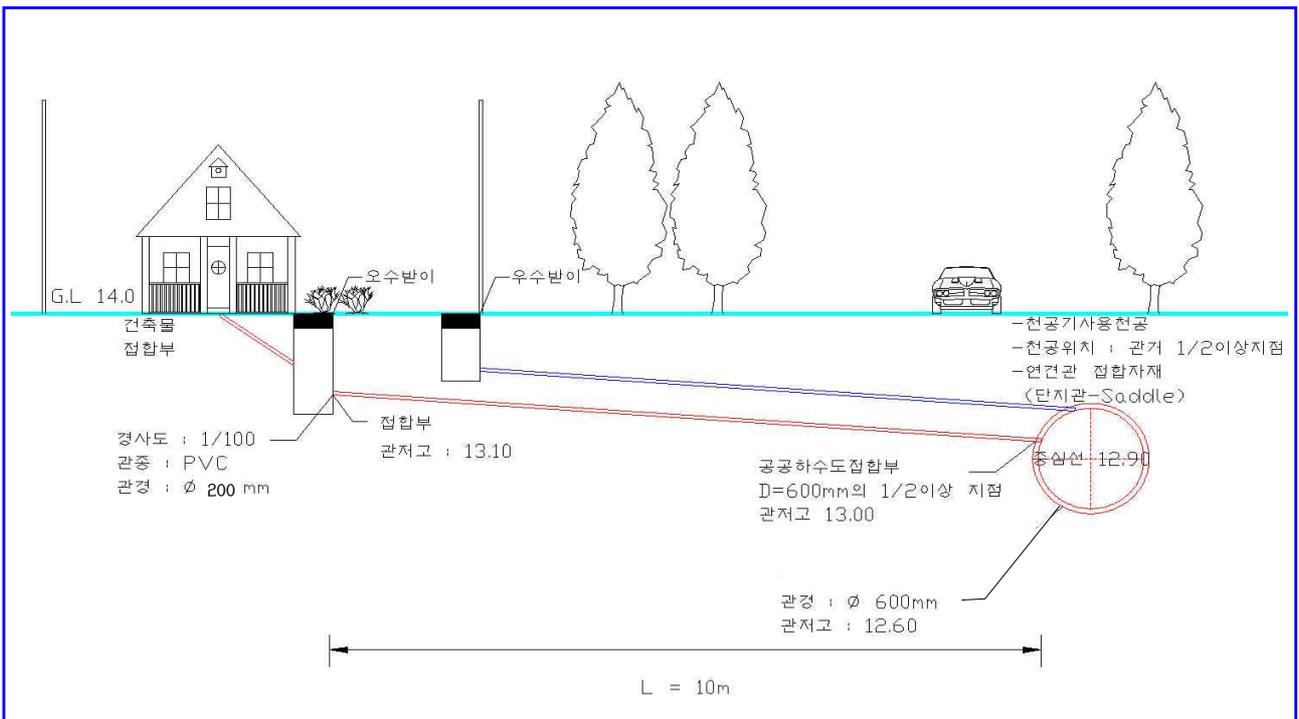
※ 도면작성 “예시”

① 합류식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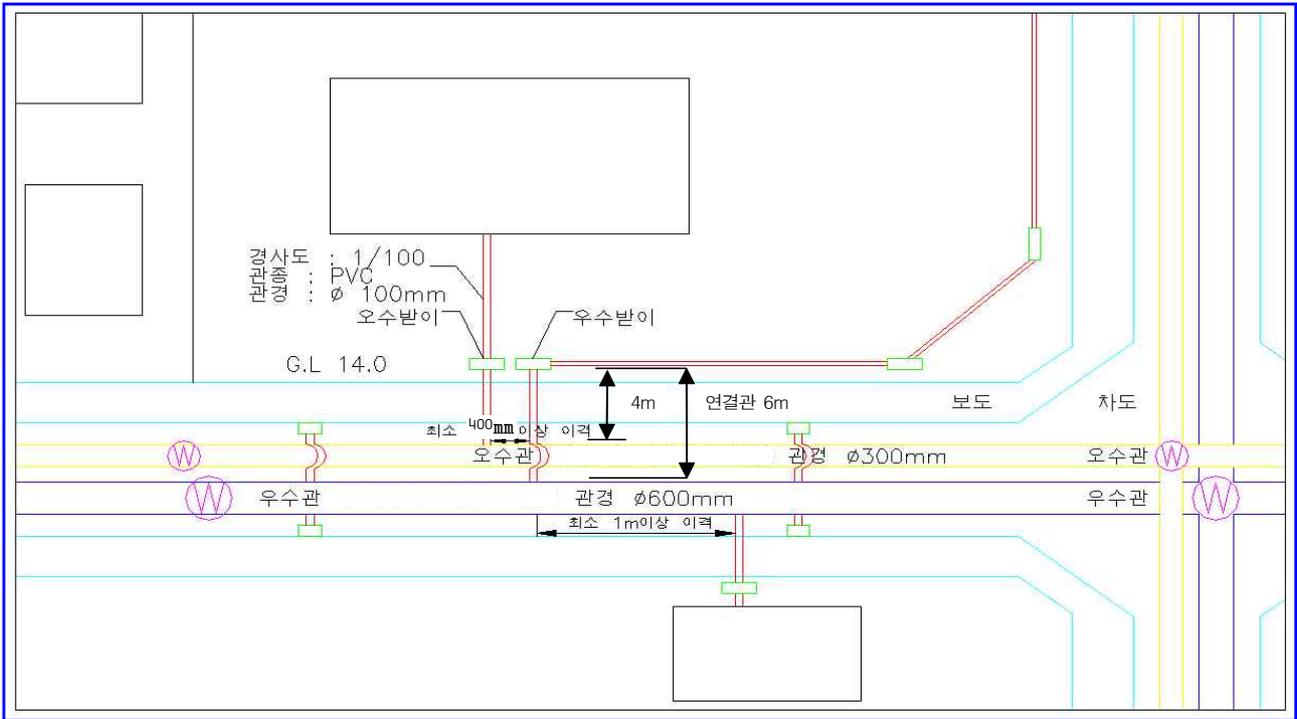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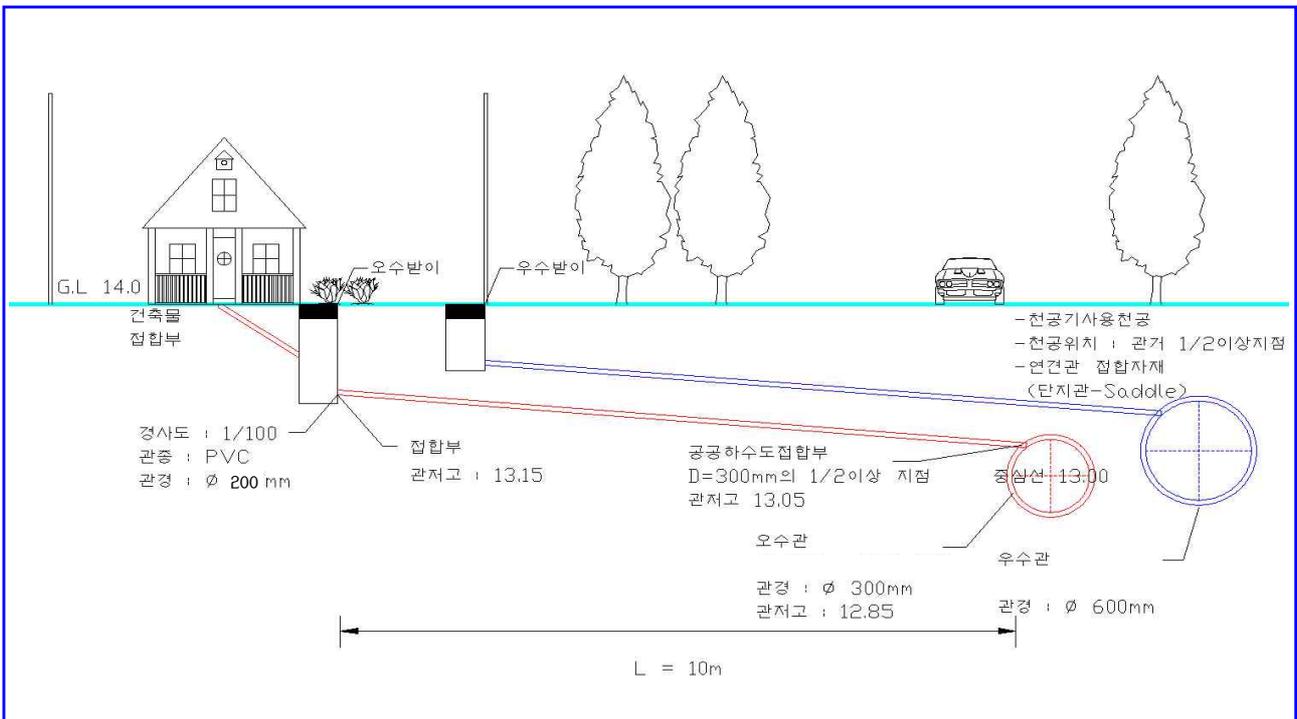
- 상세도 작성 : 물받이, 우,우수받이, 공공하수관로 연결부 등

② 분류식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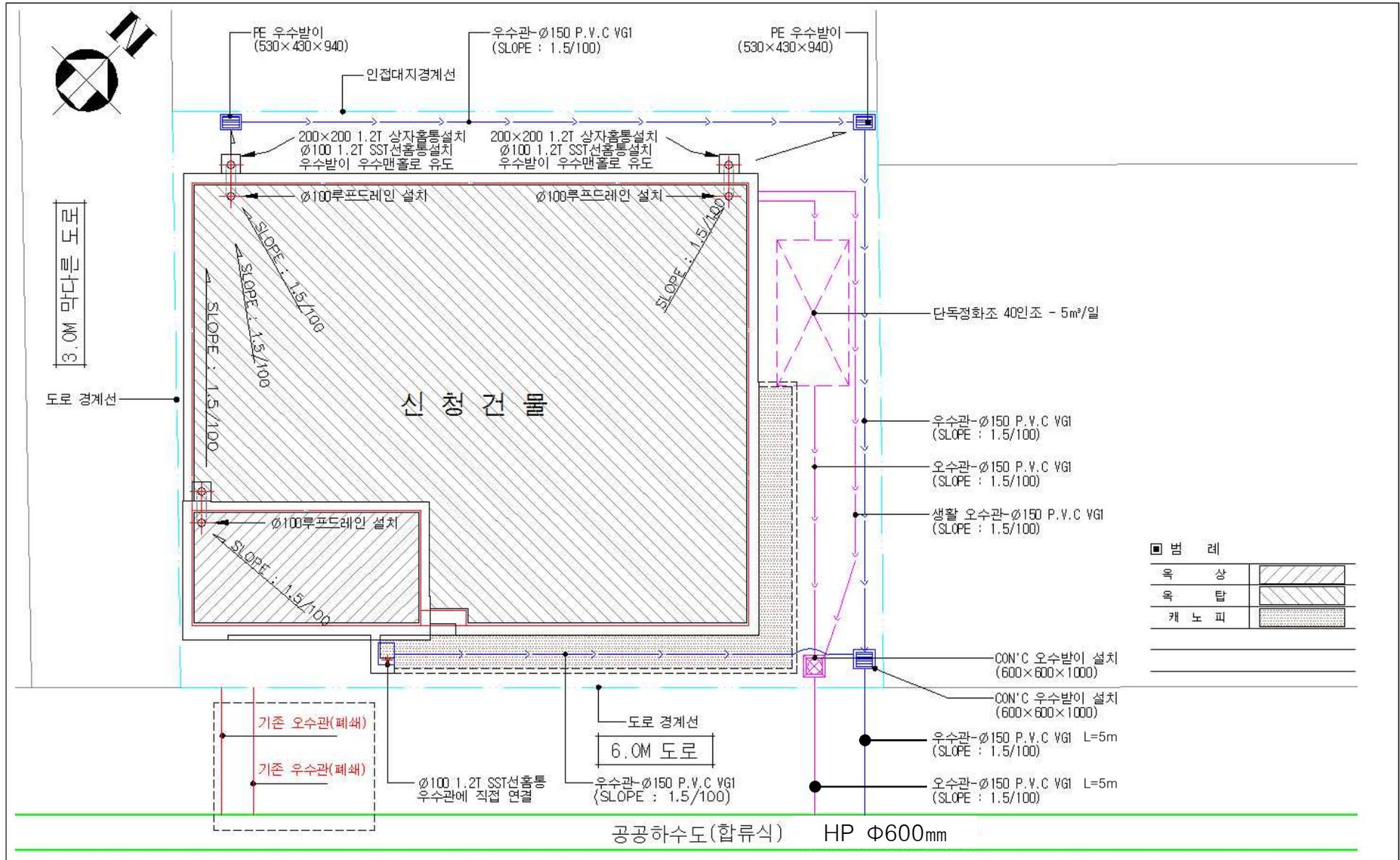


- 입면도



- 상세도 작성 : 물받이,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로 연결부 등

③ 표준 평면도



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1) 신고서 양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흙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뿔기, 인력뿔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오수) ∅ mm (우수)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오수) m (우수) m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 반)			
	배출수량	m ³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m ³ /일)		
		수질(mg/l)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2)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정된 신고서에 기재 내용 누락 없이 작성

※ 공사착공(준공)연월일 · 공사실시방법 및 시공자 ·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누락 주의

○ 배수설비 설계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 시공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시공을 해야 함

※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①항 <신설 2009.6.26.>

- 하수도법 제27조 제②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조경공사업자 제외)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하수도법 제51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하수도법 제27조 제④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시작신고 항목 추가 작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및 수량]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⑧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 수직 증축으로 옥내 배수설비만 변경되는 경우 등 배수설비의 추가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청에 불필요한 사유서를 제출

※ 우수배수설비 추가 설치의 필요성 여부 확인

○ 증축으로 인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제출시 신축 당시 배수설비 준공도면 첨부할 것 / 배수설비 시공자 확인 날인 필요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명시된 배수설비 설치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권고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 준용

다. 배수설비 설계서 및 신고서 작성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 설계자 자체 검토 시행

구 분	확인내용	확인결과					
		여			부		
신 고 서	신고서 양식 적정 여부						
	기재내용 누락 여부	여			부(누락항목 기재)		
	시공사 기재여부	상 호		자격종목		등록번호	
		여	부	여	부	여	부
	발생수량(설치신고서 하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 산정 적정 여부	적 정			부적정(내용기재)		
수량 및 수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상인지 여부 (이상인 경우 사용시작신고 항목 작성 여부)	이 상					이 하	
	사용시작란 기 재		사용시작란 미 기 재				
설 계 서	평면도 및 입면도 작성여부	여			부		
	인접 배수설비와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여부	여			부		
	표시내용 누락 및 적정 여부	구분	누락 및 적정 여부				
			여		부		
		배수설비관경					
		배수설비관중					
		배수설비연장					
		배 수 설 비 매설경사(구배)					
		부지 내 배수설비 최소토포					
		건물 부지고					
		공공하수관 상·하류 관저고					
		공공 하수관 접속 상세도					
		천공 이격거리					
연결용 자재							
기존 배수설비 폐쇄	폐쇄구간 표시						
신고서와 설계서	상호 내용 일치여부	여			부(불일치 항목)		

2.2 배수설비 시공

2.2.1 일반사항

○ 관련 자료

- 배수설비의 시공은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및 설계서에 따라 시행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등은 도로관리부서 별도 협의

- 다만, 도로굴착·복구시 요철 또는 부등침하 발생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 1.2m 이상으로 굴착 후 폭 2m 이상으로 포장층 원상복구 하되 적정 장비로 다짐 시행 후 사진대지 제출해야 함

2.2.2 배수설비 시공시 유의사항

○ 각종 신고 및 허가 서류에 일치되도록 시공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및 설계서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보완 후 시공 조치

○ 공공하수관로 연결

- 배수설비와 공공하수관로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 흡관)을 사용하여 시공
-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을 사용하여 내구성 및 수밀성 확보
- 천공기는 배수설비 관로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공공하수관로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시공

○ 감리·감독 철저

- 전·중·후 사진 촬영시 반드시 현장 확인
- 전·중·후 사진 촬영시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전·중·후 사진은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로 천공 등 주요 시설물이 있는 지점은 지점별로 촬영

- 공공하수관로 천공시에는 천공 전, 천공 중, 천공구멍이 2개인 경우 이격 거리(400mm이상) 확인, 단지관 삽입, 배수설비관 연결로 구분하여 촬영하되 반드시 허가지번이 표시된 표시판을 설치하고 촬영
- 감리·감독의 부실로 배수설비가 부적정하게 설치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조치

○ 도로배수용 빗물받이

- 건물 차량진입부분에 하수도 뚜껑이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관리청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 후 시공 (철거, 복개, 이전, 개량 등)
 - ※ 통상 빗물받이 덮개는 주철재로 개량하되, U형 측구 덮개는 복개 후 이전
- 배수설비 우수관의 도로배수용 빗물받이 연결 금지

2.3 배수설비 준공검사

2.3.1 배수설비 준공 일반사항

○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27조 제⑤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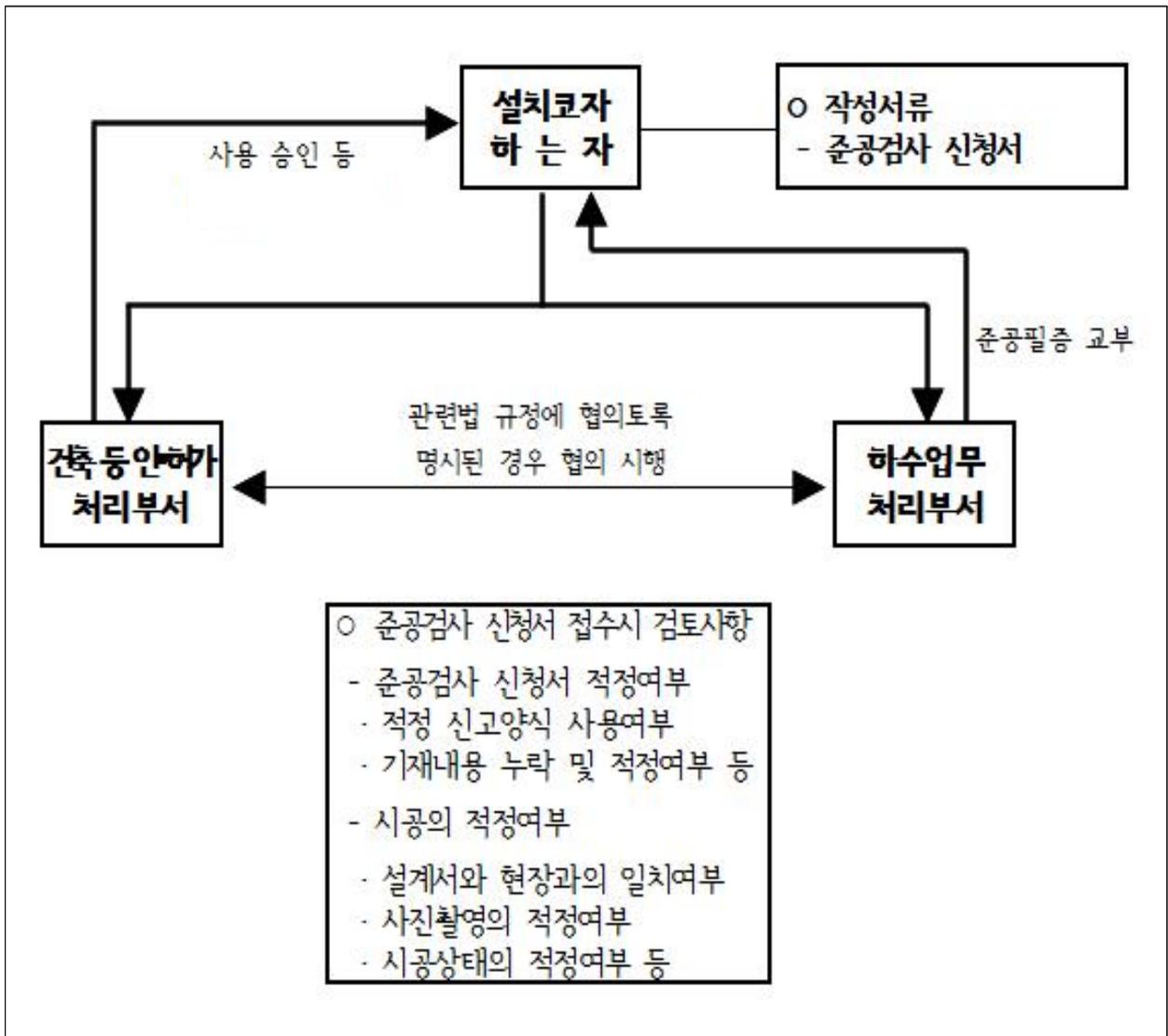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
구청장은 적정 설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준공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2.3.2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및 검토내용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자체)

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1)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건축행위	신축, 증축, 기타()			공공하수도		분류식, 합류식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오수)∅ mm	연장	(오수)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우수)∅ mm		(우수) m					
배출수량	m³/일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p>「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각 1식 기존 배수설비 폐쇄시공 전·중·후 사진 각 1식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 건축행위 허가서 사본 1부. 시공자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정된 신청서에 기재 내용 누락 없이 작성
- 준공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 배수설비 시공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시공해야 함
- 전·중·후 사진 촬영
 - 배수설비(우오수받이, 맨홀, 관로 등) 및 공공하수도 접속지점에 대하여 지점별로 촬영
 - 공공하수도 접속지점 촬영시에는 현장 확인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공공하수관로 접속지점은 천공시, 천공 후, 2공 천공시 이격거리(400mm 이상) 확인, 단지관 또는 가지달린관 설치 후, 배수설비 연결후로 구분하여 촬영하되 위치 및 허가번호를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 후 촬영하여 위·변조 방지
- CCTV 영상 자료 및 보고서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접합부를 관로 내부에서 식별 가능토록 촬영
 - 사업대상지 상·하류 첫 맨홀까지 CCTV 촬영
 - 본 항목은 배수설비 관경 300mm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지하층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관로조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시 적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 배수설비업자 자체 검토 시행

구 분	검사내용	검사결과						
신 청 서	본 지침 양식 사용	여		부				
시 공 자	신고서상 실시공자	상 호		자격종목		면허번호		
		여	부	여	부	여	부	
최종 설계서 (설치신고서와 변경이 없을 경우 검토 제외)	평면도 및 입면도 작성	여		부				
	2공 천공시 400mm이상 이격거리 확보 여부	여		부				
	표기내용	구분	누락 및 적정 여부					
			여		부			
		배수설비관경						
		배수설비관중						
		배수설비연장						
		배 수 설 비 매설경사(유속)						
		부지내 배수설비 최소토포						
		건물 부지고						
		공공하수관 상하류 관저고						
		공공하수관 접속 상세도						
		천공 이격거리						
연결용 자재								
검사항목 (최종 설계서에 의하여 시행) 확인자는 설계서와 시공상태 사진 및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시공 및 감리의 적정 여부 확인	시공의 적정 여부	구 분	시공의 적정 여부					
			여		부			
		배수설비 연결부						
		배수설비 경사						
		배수설비 관경						
		배수설비 재질						
		오·우수 분리 배관						
		오점 여부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기존 배수설비 폐쇄 시공	천공부 적정복구	수밀성 확보 등						

2.3.3 준공검사 결과 조치사항 및 준공검사 필증 교부

1) 준공검사 결과 조치사항

○ 확인 및 준공검사 결과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토록 통보

- 시정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및 필증 교부(필요시 준공검사 재시행)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및 제8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나 허가의 취소 처분

2) 준공검사 필증 양식

대전광역시 서구 배수설비 제 2017 - 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설 치 자	법 인 명				생 년 월 일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시 공 자	법 인 명				사 업 자 번 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위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오수)∅ mm (우수)∅ mm	연장	(오수) m (우수)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준 공 검 사 항 목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8. 기존 배수설비 폐쇄 적정 여부					
검 사 자	소 속	건 설 과	직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p>「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9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직인생략)</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 3 장

배수설비 폐쇄

3.1 배수설비 폐쇄 개요

3.2 배수설비 폐쇄 시공

3.3 배수설비 폐쇄 완료검사

제3장 배수설비 폐쇄

3.1 배수설비 폐쇄 개요

3.1.1 일반사항

○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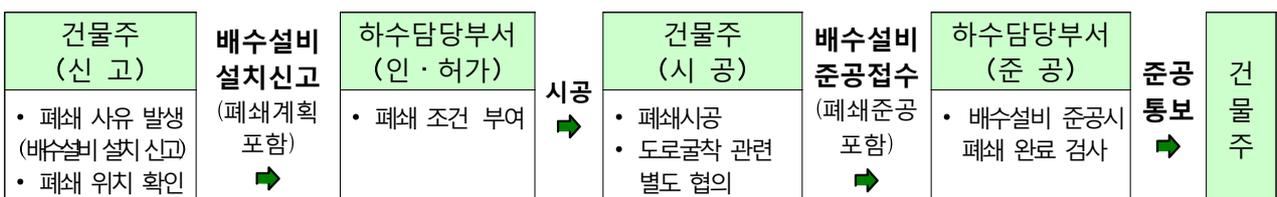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배수설비 폐쇄 절차 흐름도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경우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1.2 배수설비 폐쇄 절차 및 방법

가. 폐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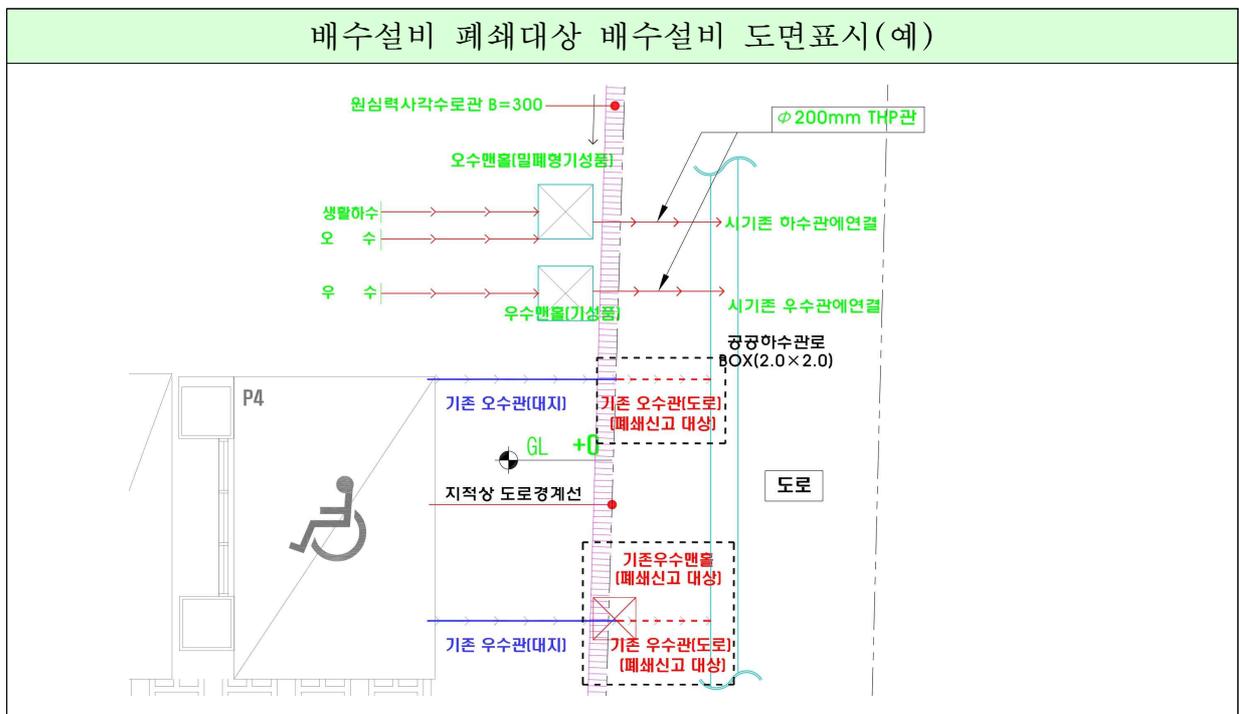
-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 철거
- 배수설비 접속을 위한 공공하수도 천공부 폐쇄(복구)

나. 폐쇄 의무자 : 배수설비 설치 신고자(건축주)

☞ 철거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시 변경된 소유자가 폐쇄 시행(배수설비 관리 의무 승계)

다. 단계별 이행사항

- 배수설비 설치 신고시 우수처리계획도에 폐쇄대상 배수설비를 표시하여 철거 및 폐쇄에 대해 하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 ☞ 도로굴착복구허가는 도로관리부서 별도 협의



- 폐쇄 시공시 본 지침 3.2 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시공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 폐쇄시공 전·중·후 사진대지 첨부

3.2 배수설비 폐쇄 시공

3.2.1 일반사항

○ 관련 자료

- 배수설비 폐쇄 계획(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에 포함)

○ 폐쇄 시공자 자격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자 제외)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 하수도법 제51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대상시설물 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지 경계 ~ 공공하수관 또는 우수관

2) 작업 범위 :

- 기존관 철거 및 천공부 복구

: 기존건축물 사유지(대지) 경계 안쪽에서 공공하수관까지 연결된 가정오수관 및 우수관을 철거하고 공공하수도관 연결부를 수밀하게 막은 후 외부에서 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하여 밀봉 조치

- 도로 굴착 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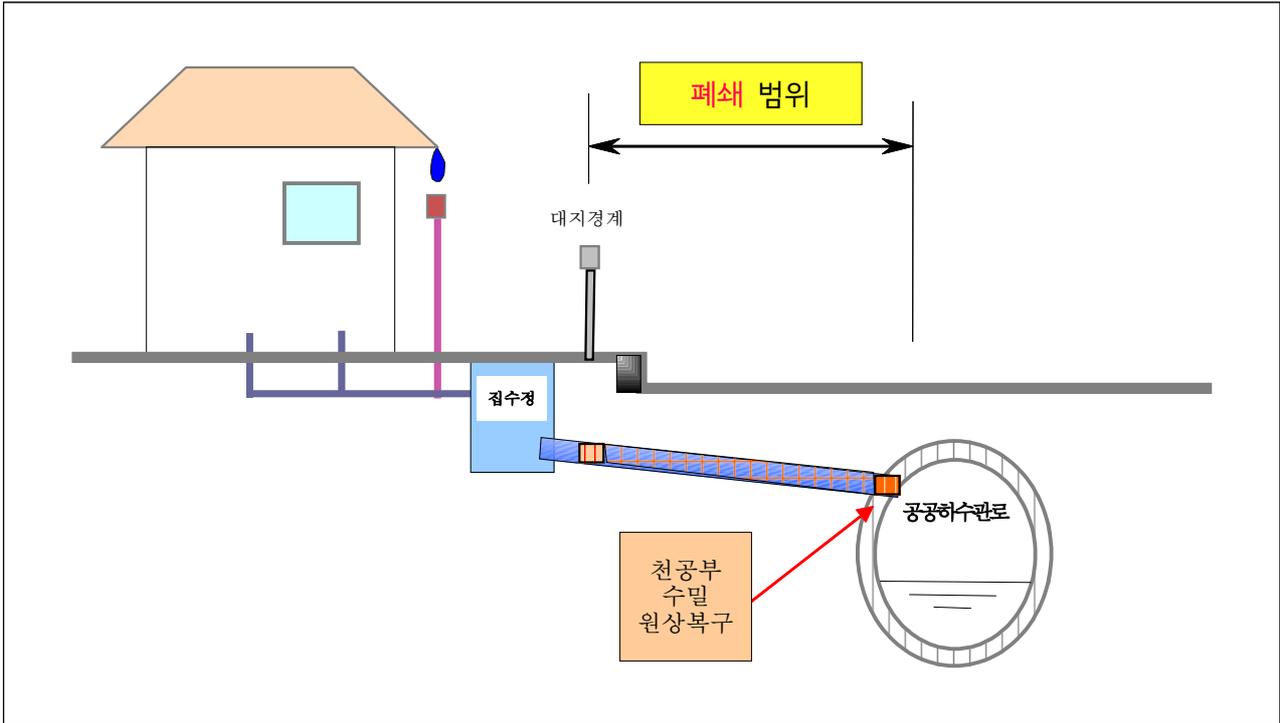
○ 폐쇄 기본 원칙

- ① 기존 관로의 폐쇄는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대상 관로 전체 또는 일부가 이설 불가능한 지장물 하부를 통과하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몰탈 채움 등의 방법을 포함한 방안을 하수업무처리부서와 협의하여 폐쇄 할 수 있다.
- ③ 공공하수관의 천공부 복구는 수밀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천공부 배면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누수 및 도로침하에 대비 하여야 한다.
- ④ 공공하수관로의 규모가 작은 반면에 천공 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서 천공부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하수관로 2.5m(1분) 정도의 원관 교체를 검토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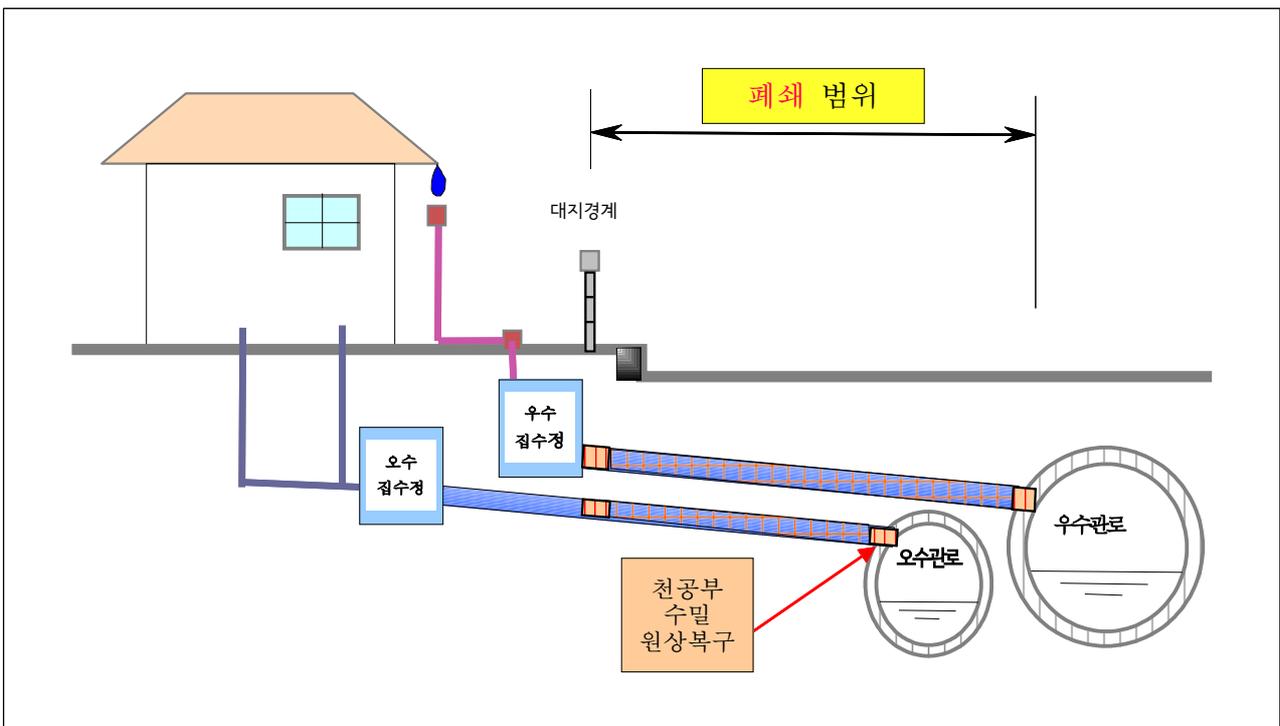
3.2.2 배수설비 폐쇄 시공방법

가. 합류식, 분류식관로의 폐쇄

1) 합류식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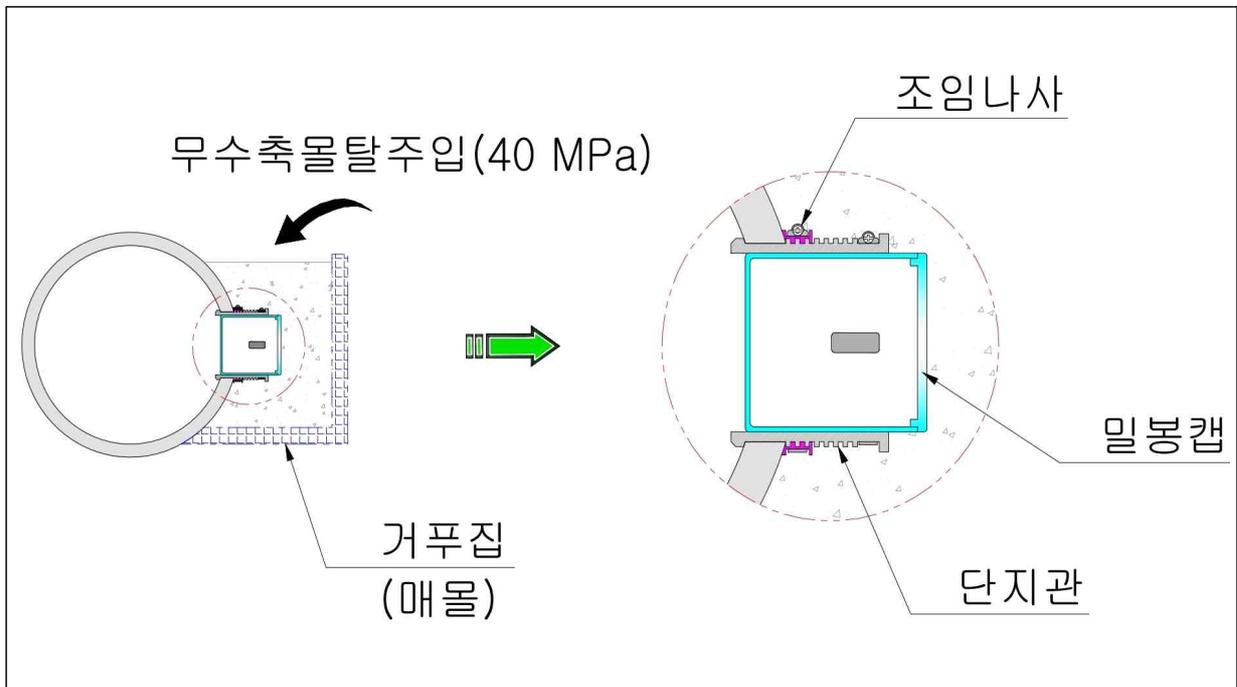
2) 분류식 관



나. 관종별 폐쇄 시공 방안

1) 원형관

- 폐쇄 예정인 천공부에 단지관을 삽입하고 수밀한 플라스틱 재질의 밀봉캡을 삽입한 후 외부 몰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 천공부 크기가 부정형일 경우는 천공기로 재천공 후 단지관 삽입 후 폐쇄 조치토록 한다
- 천공부의 크기 300mm이상 이거나 부정형 천공으로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관(1분) 교체나 별도의 폐쇄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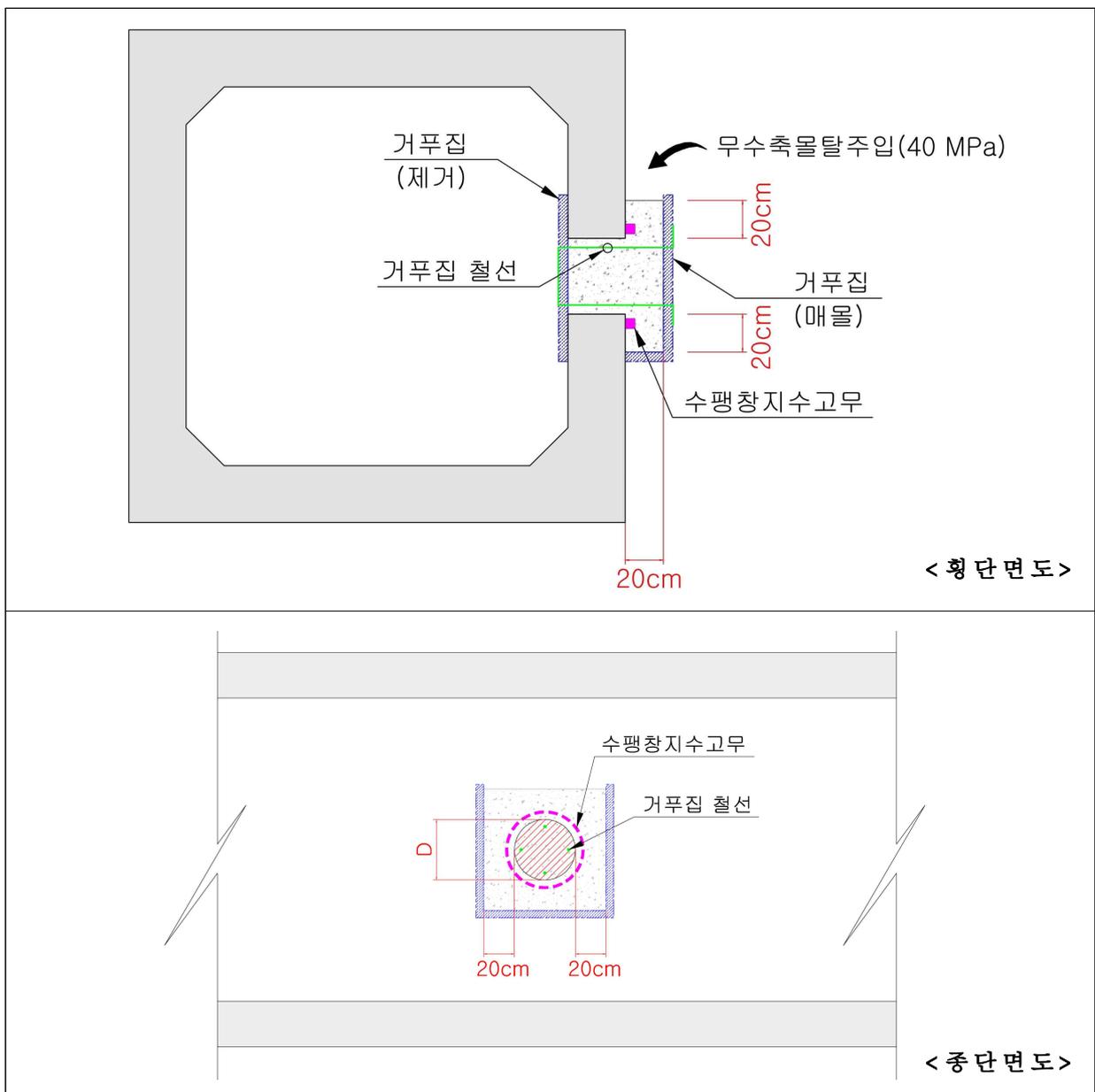


2) 사각형거

- 사각형거에 연결된 관로의 폐쇄는 일반적으로 공공하수관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므로 천공부에 대해 암거 내측에서 수밀시키도록 한다.
- 천공부의 암거 내측에 거푸집을 고정시키고, 외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상태에서 천공부 상부로 무수축몰탈을 타설하여 충진을 확인하고, 밖의 거푸집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매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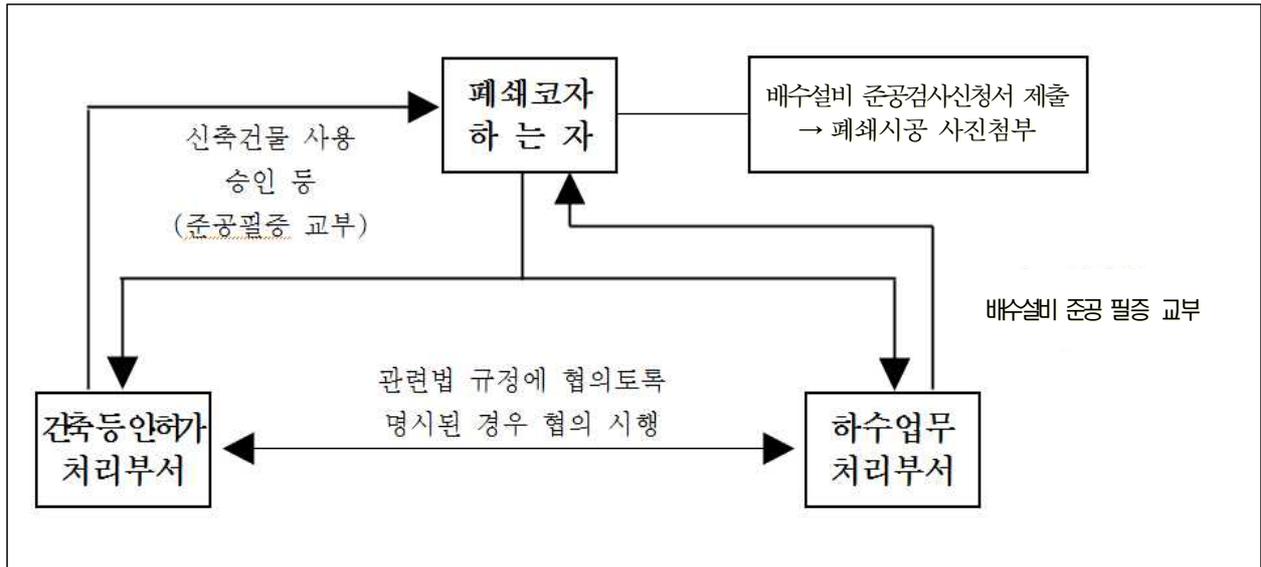
※ 위 폐쇄방법은 예시이며, 사각형거 외측에서 수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시공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업무부서와 협의 시행

- 다짐 시공 시 몰탈부에 위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배수설비 폐쇄 완료 검사

3.3.1 배수설비 폐쇄 완료 처리 절차



3.3.2 구비서류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시 첨부

○ 폐쇄 시공 전·중·후 사진 촬영

- 공공하수도와 접속되어 있는 지점에 대하여 지점별로 촬영
- 공공하수도와 접속되어 있는 지점 촬영 시에는 현장 확인이 가능토록 촬영
- 배수설비 폐쇄 작업과정을 구분하여 촬영하되, 위치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 후 촬영하여 위·변조 방지

○ CCTV 영상 자료 및 보고서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폐쇄부를 관로 내부에서 식별 가능토록 촬영
- 사업대상지 상·하류 첫 맨홀까지 CCTV 촬영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관로조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3.3 배수설비 폐쇄 완료 검토내용

○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 배수설비 폐쇄 적정 여부
-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
- 주변 지장물과 저축 위해성 처리 여부(전신주 및 지중관 등)
-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 도로 구간 복구 적정 여부(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3.3.4 배수설비 폐쇄 완료 조치사항 및 필증 교부

1) 폐쇄 완료 조치사항

-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에 의한 확인 결과 적정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
검사 필증 교부 가능
- 확인 결과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토록 통보

제 4 장

배수설비 유지·관리

4.1 배수설비 자료 및 유지·관리

제4장 배수설비 유지관리

4.1 배수설비 자료 및 유지관리

4.1.1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27조 제⑥항]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30조]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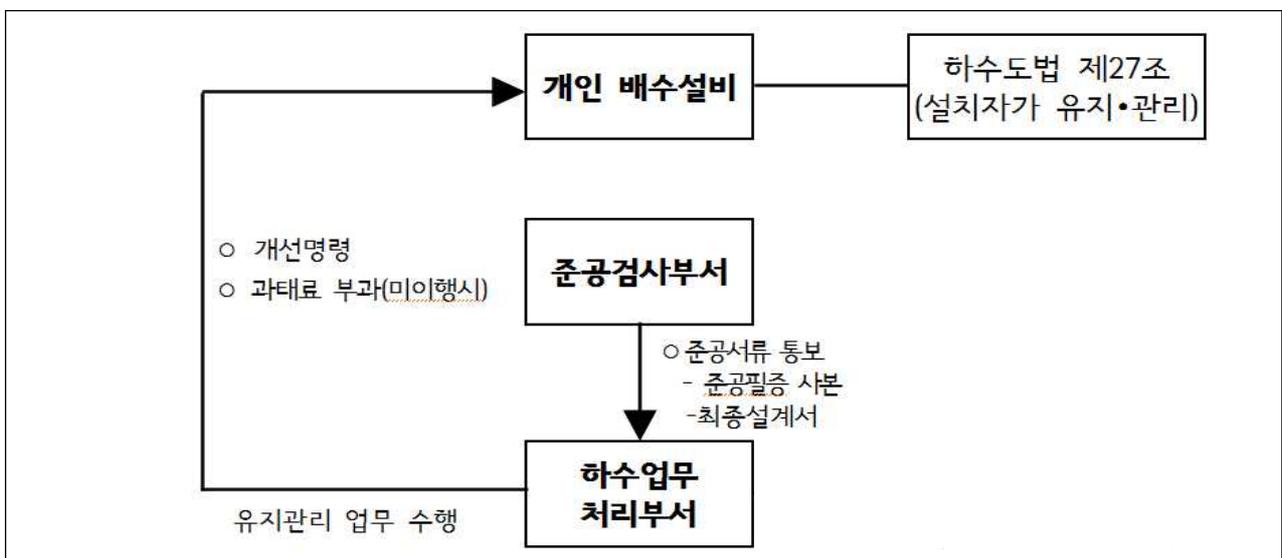
1. 제27조제①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⑥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⑦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제④항 제6호]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는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1.2 유지관리 및 자료관리

가. 유지관리 절차



나. 자료관리 방법

- 사업부서(설치자)는 최종 설계서와 폐쇄된 배수설비에 대한 완료신고서를 하수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하수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준공필증 교부
- 건축부서는 건축물대장(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 우오수계획도를 병행 표기(협조사항)

다. 일상 유지관리

< 건축주 >

- 정기점검
 - 건물주(또는 관리자)가 연 1회 우기 전(6월)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및 준설 시행
- 수시점검
 - 오·우수범람 예방을 위한 스크린조 청소 등 일상적인 수시점검 시행
- 하자보수
 - 배수설비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통상 2년) 내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토록 조치

< 관 리 청 >

- 「우리집 하수도 바로알기」 홍보물 배포
 -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배수설비 준공시 건축주에게 교부
- 감독업무
 - 배수설비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공공하수관로를 손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조치

< 우리집 하수도 바로알기 >

전 면 부

하수도는 여러분의 유지관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1 배수설비 유지관리

<p>집안에서</p> <p>변기에 장물, 담배꽂초, 물티슈 등 이물질 투입 금지</p> <p>겨울철 음식물찌꺼기는 분리 배출</p>	<p>오수받이</p> <p>오수받이에 쓰레기 투기 금지</p>	<p>정소</p> <p>악취, 병충해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p> <p>아파트가 막힌지 않고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정소</p>
<p>유조사항 1</p> <p>오수받이 뚜껑은 항상 닫아 두세요.</p>	<p>오수받이로 빗물이 들어가 하수처리장에 폐수가 발생됩니다.</p>	<p>유조사항 2</p> <p>배관다 배수구는 빗물관과 연결되어 세척오수가 비로 하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p>
<p>합조사항 1</p> <p>세탁기는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세요.</p>	<p>배관다 배수구는 빗물관과 연결되어 세척오수가 비로 하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p>	

MeV 환경부

국민행복으로 가는 6가지 약속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1 생활환경 문제의 최우선 해결

2 시장친화적 온실가스 감축

3 찾아가는 청정서비스 확대

4 환경기사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5 저비용·고효율 환경관리로 친환

6 환경과 기업, 모두가 잇는 환경규제 개혁

발행 2019년 12월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제작 및 인쇄 수도권환경본부 환경시설부 수계관리팀 031-776-5205
 제작협력 문명초교인 056-5958-1385

우리 집 하수도 바로알기

배수설비

MeV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후 면 부

1 우리가 사용한 물은 하수도시설을 거쳐서 처리됩니다

<p>오수발생</p> <p>가정, 음식점 등에서 오수가 배출됩니다.</p>	<p>배수설비</p> <p>배관된 오수는 오수받이에 모아 하수관로로 모입니다.</p>	<p>하수관로</p> <p>오수는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모입니다.</p>	<p>하수처리장</p> <p>하수처리장은 오수를 정수하여 하천에 방류합니다.</p>
--	--	---	---

2 우리 동네 하수도가 분류식인지 합류식인지 알아봅시다

<p>분류식</p> <p>오수받이, 우수받이</p> <p>우유관, 우수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와 빗물을 구분하여 모읍니다. 정화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하수구 냄새가 없습니다. 	<p>배수설비</p> <p>빗물</p> <p>오수받이, 우수받이</p> <p>우수관, 우수관</p> <p>우유관, 우수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와 빗물이 합쳐집니다. 정화조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p>합류식</p> <p>빗물</p> <p>오수받이, 우수받이</p> <p>우수관, 우수관</p> <p>우유관, 우수관</p>
--	---	---

3 현대화된 분류식 하수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이월됩니다

<p>오수와 빗물을 구분하여 모읍니다.</p> <p>오수와 빗물이 섞인 후천에 오염되고 처리용 효율이 낮아집니다.</p> <p>배수설비</p>	<p>하수구 냄새를 방지합니다.</p> <p>유관 냄새도 악취가 없게 생활환경이 좋아집니다.</p> <p>배수설비</p>
--	--

4 하수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은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옵니다

<p>하수가 막혀 침수돼요</p> <p>작은 비에도 도시가 침수되어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p> <p>하천이 오염돼요</p> <p>오염된 물이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p>	<p>하수도 요금에 늘어나요</p> <p>하수처리장 유지 비용이 상승하여 하수도 요금이 늘어납니다.</p> <p>해충과 수인성 질병 발생</p> <p>공복질이 저해되고 병균과 해충, 악취가 발생합니다.</p>
--	---

5 하수도시설(배수설비)은 전문업체가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신규 및 증경간시 배수설비 설치신고와 준공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 유지관리 건물주는 배수설비를 유지관리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역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공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 증경간시

▶ 배수설비 전문업체는 상하수도 전문공사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 등이 있습니다.
 ▶ 설치방법,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6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p>피해가 발생하는 이유</p> <p>오물이 침범 발생 골문손상으로 도시가 들어와 발생 피aggi가 가려짐 발생 배관정조, 쓰레기 투기</p>	<p>피해기를 그대로 두면</p> <p>하수노출 악취발생 처리장 운영권한 하수처리장</p>
--	---

제 5 장

관 련 법 규

5.1 법 령

5.2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규

5.1 법령

가. 하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2.2.1.>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 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 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검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검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7.]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⑦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2009.1.7.>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 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삭제 <2009.6.26.>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1.2.9., 2014.7.16.>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 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항목·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5., 2014.7.16.>

⑥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제목개정 2014.7.16.]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6.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 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9.6.26.>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4.7.16.>

1. 하수처리구역 밖
 -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5.14., 2012.12.20.>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타법개정]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착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

라. 대전광역시 조례 및 규칙 관련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15.12.18.] [대전광역시조례 제4596호, 2015.12.18., 일부개정]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8.14., 2015.12.18.>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관로조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바. 도로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76호, 2015.1.6., 일부개정]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⑧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3.7.30.]

5.2 질의회신

포천시 -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관련)

[16 - 0340, 2016.0.0, 경기도 포천시]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포천시는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그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로부터 그 배수설비 시공을 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

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되,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배수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의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인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는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대행할 공사업자를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수설비 공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이는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할 때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무자격 공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고, 같은 영 제2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공사업자들 중에서 공사업자를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명할 수 있는 권한만을 준 것인바,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배수설비 설치의무를 이행할 때 법정요건을 갖춘 공사업자들 중에서만 공사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하도록 한정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시 공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일부 제한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일정요건을 갖춘 배수설비 공사업자 중에서 공사업자를 선택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를 대행하여 배수설비를 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일 뿐,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가 아예 공사업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특정 공사업자를 통한 공사대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소유자·관리자를 대신해서 특정한 배수설비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그 공사업자와 사이에서만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게 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수도법」 제27조제2항은, 종전에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부설시공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일정기준을 갖춘 전문 시공업자를 선택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인바(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하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규정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인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를 배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수구역 안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배수설비의 시공 요건을 갖춘 자 중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그 공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공사비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그 배수설비 시공을 하게 하도록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 록

A.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B. 설비업체 간담회 의견 조치내용

A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A.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A.1 대전광역시 구청 및 각 관련살과 협의

-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p>(당초) - 다만, 도로굴착·복구시 요철 또는 부등침하 발생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 <u>2m 이상</u>으로 포장층 원상복구 준수</p> <p>(변경) - 다만, 도로굴착·복구시 요철 또는 부등침하 발생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 <u>1.2m 이상</u>으로 포장층 원상복구 준수</p> <p>(사유) 도로굴착 최소폭(1.2m) 기준으로 적용 / 배수설비의 규모와 상관없이 폭 2m 이상 적용은 과도한 기준임.</p>	<p>(변경) - 다만, 도로굴착·복구시 요철 또는 부등침하 발생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 1.2m 이상으로 굴착 후 폭 2m 이상으로 포장층 원상복구 하되 적정 장비로 다짐 시행 후 사진대지 제출해야 함</p> <p>(사유) 굴착폭과 포장복구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다짐불량 방지를 위해 적정 장비를 통한 다짐을 시행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사진대지를 제출토록 함</p>	일부 반영
	<p>(당초) ○ CCTV 영상자료 및 보고서 - 공공하수도과 배수설비 접합부를 관로 내부에 식별 가능토록 촬영 - 사업대상지 상·하류 첫 맨홀까지 CCTV 촬영</p> <p>(변경) ○ 배수설비 설치 협의 또는 준공시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하수업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막, 관로조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조사후 관련 <u>증빙자료를 제출</u>하여야 한다.(추가)</p> <p>(사유) 관리청에서는 배수설비 준공시 건축물의 규모와 세대수, 지역여건 (상업지역)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배수설비의 검사방법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CCTV 촬영방법으로만 한정하여 적용 함은 과도한 기준임.</p>	<p>(당초) ○ _____ - _____ - _____ - _____</p> <p>- 본 항목은 배수설비 관경 300mm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지하층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p> <p>(변경) 추가 내용 미반영</p> <p>(사유) 공공하수도 관로 내부에 공사중 몰탈 유입 등 확인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CCTV 촬영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규모를 위와 같이 특정하고, 추가로 제시된 의견인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에 대한 부분은 이미 대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중복되어 별도 표기하지 않음</p>	일부 반영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p>(당초) ○ 폐쇄 예정인 천공부에 단지관을 삽입하고 수밀한 <u>플라스틱 재질의 밀봉캡을 삽입한 후 외부 몰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u></p> <p>(변경) ○ 폐쇄 예정인 천공부에 단지관을 삽입하고 <u>수밀성이 있는 재질(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고강도 재질 등)의 밀봉캡을 삽입하여 폐쇄하되, 폐쇄 부위가 도로 상부로부터 1m 이하인 경우 파손을 위한 보호공(외부 몰탈 타설)으로 조치한다.</u></p> <p>(사유) 지하시설물의 최소 매설깊이(1m)를 기준으로 적용 / 폐쇄 부위가 최소 매설깊이 이하일 경우는 차량 등 하중에 의한 장기적인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공 조치가 필요할 것임.</p>	<p>외부 몰탈 타설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연결관 천공부 폐쇄시 수밀성 확보를 위해 밀봉캡 조치 후 추가적인 보완에 의미가 있으므로, 지하시설물 매설깊이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p>	미반영
	<p>(당초) ○ 사각형거에 연결된 관로의 폐쇄는 일반적으로 공공 하수관로의 진입이 가능하므로 천공부에 대해 암거 내측에서 수밀시키도록 한다.</p> <p>○ 천공부의 암거 내측에 거푸집을 고정시키고, 외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상태에서 천공부 상부로 무수축몰탈을 타설하여 충진을 확인하고, 밖의 거푸집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매몰시킨다.</p> <p>(변경) ○ 사각형거~수밀시키도록 한다. ○ 천공부의 ~ 매몰시킨다.</p> <p>※ 위 폐쇄방법은 예시이며, <u>사각형거 외측에서 수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여 시공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업무부서와 협의 시행.(추가)</u></p> <p>(사유) 사각형거 내측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여건 및 안전이 확보 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각형거의 폐쇄방법을 내측 시공법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외측 시공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폐쇄가 될 수 있도록 함.</p>	<p>시공성, 안전성 등 작업여건에 따라 시공법 변경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하수업무부서와 협의 시행은 바람직함</p>	반영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대 덕 구	하수관로 악취 역류 방지를 위하여 트랩이 포함된 오수받이 설치를 배수설비 협의조건 제시 필요	본 지침(p.6)상 악취 저감과 더불어 하수 역류 방지 기능까지 포함한 플랩 밸브 설치를 제시하였음	미반영
유 성 구	배수설비(우수)의 공공우수관로 직접 접속으로 인한 도로 굴착이 필요한 경우 배관 공종(전기, 통신, 상수도 등)의 다수 시공으로 인해 도로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차량운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차량파손, 걸려 넘어짐 등)가 우려되므로 도로면 유지관리에 유리한 배수설비(우수)의 도로 빗물받이 접속을 허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도로 빗물받이는 도로배수시설로서 개인 배수설비의 접속은 그 목적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수 허용 용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외에도 가로수 낙엽 등으로 인해 도로 빗물받이가 막힐 경우 이에 접속된 개인 배수설비 역류 피해도 충분히 예상되어 본 지침상 반영하지 않음	미반영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구비서류 중 CCTV 영상자료 제출 해당유무는 적정 규모 및 접속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이 효율적인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CCTV영상자료 제출 해당 유무는 배수설비 관경 300mm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지하층 있는 경우에 적용토록 함	반 영

B

설비업체 간담회 의견 조치내용

B. 설비업체 간담회 의견 조치내용

B.1 배수설비 주요업체 간담회 의견

• 주요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랩밸브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주의 반발 예상되며, 겨울철 관로 결빙 등 부작용 우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방지와 더불어 하수역류 방지기능까지 가능하며, 단가가 저렴하고 시공 및 철거가 용이하나, 사례가 적어 우선 시행 후 지속 시행여부 검토하겠음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도급계약서의 경우, 현장에서 신뢰에 따른 구두계약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강제사항은 무리가 있음 •계약서가 없더라도 하자보수를 위한 시공업체 추적시 스크린조에 라벨을 붙여놓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도급계약서의 경우,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서 가급적 문서계약을 일반화하여 투명한 계약 및 향후 하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람 	반영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내 배수설비 공사의 경우 건축공사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배수설비 시공업체가 실제 시공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배수설비 협의조건(관경, 관종, 빗물받이 연결 지양) 등 이행하기가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구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옥외의 배수설비 공사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에 도급자로 명기토록 하여 시공을 대행하도록 명하고 있으므로, •대지 내 옥외 배수설비 공사의 경우 엄연히 배수설비업체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며 업체간 관행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8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미반영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반영 되려면 상수도 수탁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관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지침상 요구사항들이 모두 반영되기 위해서는 설계 협의, 시공, 준공 단계별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갈 계획임 •관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은 불가함 ※법제처 법령해석례(16-0340) 	미반영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TV촬영의 경우, 현장별 규모 및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 지하층 시공 시 유출지하수를 인근 빗물받이로 배출할 때 몰탈이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예) 대지 내 관경 300mm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층 있는 경우 등 	CCTV영상자료 제출 해당 유무는 배수설비 관경 300mm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지하층 있는 경우에 적용토록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 및 포장복구 폭원 관련하여 대지 경계로부터 50cm의 근거리 공공하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폭 2m 포장복구 적용은 불합리하며, 다짐장비의 경우 롤러보다 램마가 다짐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 시 포장복구 폭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기계다짐을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반영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연결관 폐쇄의 경우 건축물 멸실 또는 철거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배수설비 업체는 건축물 시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 연결관을 찾기도 어렵고 참여 시기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배수설비 준공 당시에 폐쇄 절차 이행이 아닌, 건축물 멸실 신고 시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철거 및 멸실 단계에서 연결관 폐쇄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실제 대지 내 하수관 철거가 이루어지는 신축공사 터파기 공정에서 연결관을 철거 및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수설비 설치 신고 단계에서 기존 연결관 폐쇄 조건을 부여하고, 폐쇄 또한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배수설비에 참여토록 유도함 	미반영

구 분	검 토 의 견	조 치 내 용	비 고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시공해놓은 현장에 대해서는 본 지침에 대하여 일괄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또는 건축 협의)부터 적용토록 하겠음 	반 영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내 주차장 등 진출입로에 도로 빗물받이가 저촉될 경우 반드시 이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주택 진출입로에 저촉되는 빗물받이는 굳이 이설할 필요 없으며 다만 덮개는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주철제로 변경해야 함 •구도심 U형 측구에 설치된 덮개는 받침 등 내구성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진출입로 저촉 시 반드시 복개 후 이설해야 함 	일 부 반 영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설계시 배수설비 도면상 공공 하수도 위치가 하수관망도와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설계로 인해 시공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지침 시행 후 건축설계 시 하수관망도에 대한 사전 확인, 관저고 등 반영된 측량에 따른 종단계획 수립 등 현장에 부합되는 배수설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음 	반 영